

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. 12. 13 선고 2018가단1881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1. B

2. C

3. D

4. E

5. F

변 론 종결 2019. 11. 22

판 결 선고 2019. 12. 13

주 문

1.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은 3/11지분에 관하여, 피고 C, D, E, F는 각 2/11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1993 . 5. 26. 접수 제 6076 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1993. 5. 24. G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 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,000,000원,채무자 원고,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(이하 '이 사건 근저당권'이라 한다)설정계약을 체결하고,1993.5. 26. 이를 원인으로 주문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,

나. G은 2005 . 2. 27. 사망하였고, G의 처인 피고 B과 자녀들인 피고 C, D, E, F는 다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.

그 상속지분은 아래와 같다.

○ 피고 B : 3/11

○ 피고 C,D, E,F : 각 2/11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갑 제1호증의 기재(가지번호 포함),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,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, 설령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인 1993 . 5. 26. 부터 10년이 되는 2003 . 5. 26.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,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부동산 중 각 해당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양성 욱

별지